2025년 가구 스마트제조공정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공고

경기도 관내 중소 가구 제조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「2025년 가구 스마트제조공정시스템 구축 지원」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2. 10.

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

1 지원사업 개요

□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 2025년 가구 스마트제조공정시스템 구축 지원사업

○ 모집기간 : 2025. 2. 10. ~ 2025. 3. 19. 18:00 까지

○ 지원방법

-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산업지원정보시스템 온라인접수(www.gdtpi.or.kr/recpt) (온라인접수 불가 시 이메일 신청 접수 pke@gdtp.or.kr 박가을 선임)

○ 지워내용

- 가구 제작 및 디자인, 설계 표준화를 위한 프로그램* 구입, 교육, 컨설팅 비용 지원 * 3D 설계/도면작성/렌더링 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춘 시스템

그ㅂ	사업비(100%)	
구분	도비 지원금(70%)	기업 자부담(30%)
총 사업비 (부가세 미포함)	총 사업비의 70% 이내 (최대 25,000천원)	총 사업비의 도비 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
지원규모	12개사	
사업기간	협약 후 ~ 25년 11월 이내 구축 완료 필수	

○ 지원대상

- 경기도 내에 소재한 중소 가구 제조기업
-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으로 신청 가능하며,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(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 장 명세)를 통해 신청 가능(<u>공장등록증 필수</u>)

○ 신청자격

- (도입기업) 경기도 관내 중소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제조기업으로서 가구 제작 및 디자인, 설계 표준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함
- (공급기업) 가구 제작 및 디자인, 설계 표준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(프로그램 교육 및 컨설팅 필수)

○ 신청 제외대상

-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중인 기업,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
-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등 경기도 법위반 기업
-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
- 가구 스마트제조공정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구 축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

2 세부 지원내용

□ 프로그램 구축, 교육, 컨설팅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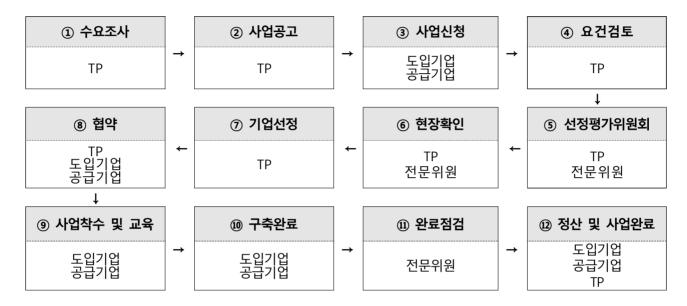
- 가구산업 디지털 전환(스마트제조공정)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
 - 3D로 빠르고 효율적인 설계/도면작성/렌더링 진행
 - 설계/렌더링 즉시 CNC 머신이 작동하는데 필요한 코드 생성하여 설 비 제어 진행
 - 자체 보유 재고량 및 유통, 판매 내역과 연계되어 전반적인 생산 관리 가능
- 교육 및 컨설팅
 - 스마트제조공정시스템 프로그램 사용법 교육 및 컨설팅 지원

□ 지원조건

- (지원조건)
 - 구축 지원은 총 사업비의 70% 이내 도비 지원(최대 25,000천원), 나머지는 기업부담
 - 구축장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주소지와 동일해야 하며, 구축장 내에 구축하여 야 함
 - 구축 지원 접수 및 평가 결과, 고득점순으로 선정과제 및 후보과제*를 정함

- * 후보과제 : 평가결과 미선정되었지만, 선정과제 포기 또는 중도 해약시 지원가능한 과제
- 지원사업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이 협약체결 이후 확인된 경우, 협약 해약 및 도 지원금 환수
- 도입기업은 과제 지원 후 실시하는 만족도 및 성과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, 우수 지원사례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

□ 지원절차



□ 선정절차

○ ①요건검토 → ②선정평가위원회 → ③현장확인

구분	개요	평가기준
①요건검토	- 사업 참여 희망기업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등을 확 인	- 중대 하자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는 사업에서 제외
②선정평가위원회	- 서류평가(사업계획서 등) 및 발표평가 를 통해 지원 적합성을 평가 - 법위반 기업은 선정평가위원회 전 총 점의 20% 감점 통보 후 기업의 이의 및 구제 신청 시 선정평가위원회 상정 심의	- 선정평가위원회 최종점수로 선정과제 및 후보과제 선발 - 우대가점* 점수 기준[최대 5점] * 우대가점 : 기업RE100 참여기업(2점),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(2점), 주4.5일제 도입기업(2점) - 이의신청 기업의 감점 여부를 선정평 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여부 결정
③현장확인	- 선정평가위원회 점수에 따라 예산 허용 범위 내 지원 가능한 기업에 대해 사업계획서와 기업 현장의 공정, 설비등 일치 여부, 허위 기재여부, 기보유 설비 이상 유무 등 확인	- 사업계획서와 현장 일치 여부 확인

□ 평가 기준 및 가점·감점 사항

○ (선정평가 기준)

평 가 항 목		
도입 기업 역량 (30)	·상시 종업원 수, 매출액, 수출액(해당되는경우), 영업이익,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?	10
	◦도입기업의 현 생산 공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?	10
	도입기업의 가구 스마트제조공정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제시하였는가?	10
공급 기업 역량 (10)	· 공급기업의 자체적인 솔루션 보유 여부 및 협약기간 내 도입기업이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 완료 가능한가?	10
구축 필요성 (30)	∘ 가구 스마트 제조공정시스템 구축의 범위가 명확하고, "핵심성과지표"에 부합 되도록 작성되었는가?	10
	∘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? (구축목표 – 구축내용 -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, 기존수치/목표수치의 근거제시, 지표 계산식 제시,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)	20
	∘ "구축 솔루션과 기존 장비 연계도"가 도입기업 업종의 핵심성과지표에 부합 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?	10
사업 지원 적정성	∘ "AS-IS 대비 TO-BE비교표"와 "소프트웨어 기능 구성도"의 서술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?	10
(30)	·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사용자 교육·훈련 계획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?	5
	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과 후속조치 방안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?	5
합계		

○ (가점 사항) 신청기업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, 최대 5점 적용

구분	가점 항목	증빙서류	배점
1	기업RE100 참여기업	기업RE100 참여기업 인증서	2
2	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	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서	2
3	주4.5일제 도입기업	주4.5일제 도입기업 인증 기업	2

- ※ 사업신청시 증빙서류 제출
- (제외 대상)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법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은 지원사업 선정 후에도 법위반기업 조회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가 될 수 있음

적용법률		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	
1. 공정	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	(소관기관) 공정거래위원회 (서류제출) 건별 법위반 사실 확인서	
	③ 표시광고법	(조 회)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건심사·의결 조회 위반사실 여부 조회	
		(소관기관) 고용노동부,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청	신청기업
2. 노동	④ 근로기준법	(서류제출) 기업소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청	일괄조회
2. 10	⑤ 산업안전보건법	법위반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신청 발급	(신청자
		(조 회) 고용노동부, 고용노동 지방청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	미제출)
	⑥ 폐기물관리법	(소관기관) 환경부, 기업소재 관할 시군	
a 항경	⑦ 대기환경보전법	(서류제출) 환경부, 기업소재 관할 시군 행정처분 내역	
3. 환경	⑧ 소 음 진동관리법	및 법위반 사실 확인서 등 증빙서류 신청 발급	
	⑨ 물환경보전법	(조 회) 환경부,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	
		(소관기관) 세무서, 기업소재 관할 시군	ntall.
4. 납세	⑩ 국세기본법	(서류제출) 세무서,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확인서	과제 사청사
	⑪ 지방세기본법	등 증빙서류 신청 발급,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	신청시 제출
		(조 회) 세무서,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	세골

- 사업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(11개 법률) 확인 시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경기도 지원 사업 참여 자격 제한
- (현장확인 점검 항목) 현장확인 시 1개 이상의 '부' 항목이 있는 경우 협약 대 상 제외

점 검 항 목		확인여부
	∘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(휴·폐업 등)	적/부
신청서 대조·확인	∘ 활용계획서(현행)와 현장의 공정, 설비 등 일치 여부	적/부
	·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(정상가동 등)	적/부

□ 기간 및 제출서류

- 접수기간 : 2025년 2월 10일 ~ 2025년 3월 19일 18:00 까지 신청 접수
- 사업 신청단계 제출서류(사업 신청시 제출)
- 온라인 제출
-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산업지원정보시스템 온라인접수(www.gdtpi.or.kr/recpt) (온라인접수 불가 시 이메일 신청 접수 pke@gdtp.or.kr 박가을 선임)
- 문의처 :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북부스마트제조혁신센터
 - 031-539-5145, pke@gdtp.or.kr
- 사업 신청단계 제출서류 목록

구분	사업 신청단계 제출 필요 서류	필수 여부	비고
1	(도입기업) 사업신청서 1부	필수	
2	(도입기업) 사업계획서 1부	필수	
3	(도입기업) 소기업/중기업 해당 확인서 1부	필수	참여자격 확인
4	(도입기업, 공급기업) 정보활용동의서 1부	필수	
5	(도입기업, 공급기업)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* 국세납세증명서: 홈택스-민원증명-국세증명신청-납세증명서 * 지방세납세증명서: 정부24-지방세 납세증명서 검색-민원출력	필수	참여자격 제한사항 확인
6	(도입기업, 공급기업)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* 종된사업장은 "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" 추가 제출 * 홈택스(www.hometax.go.kr)-민원증명-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	필수	도입기업 도내기업 여부 및 구축장소
7	(도입기업) 공장등록증 1부	필수 확인	
8	(도입기업)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 *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(http://total.kcomwel.or.kr)	필수	종업원수 및 프로그램 교육 대상자 확인
9	(도입기업) 22년, 23년 재무제표 * 홈택스(국세증명・사업자등록・세금관련 신청/신고 > 즉시발급 증명 > 표준재무제표증명(개인/법인))	필수	매출액 및 부채비율 확인
10	(도입기업)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	필수	
11	(도입기업) 기업의 법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약서 1부	필수	
12	(도입기업) 우대가점 증빙서류(해당시) 1부 * 기업RE100 참여기업 *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* 주4.5일제 도입기업	해당시	가점증빙 확인

4 기타 사항

- 제출된 서류 및 계획서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,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, 환수 및 제재할 수 있음
- 선정평가는 발표평가 진행

붙임 1. 사업신청서(양식) 1부

- 2. 사업계획서(양식) 1부
- 3. 개인·기업정보 활용 동의서(양식) 1부
- 4.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 1부
- 5. 기업의 법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약서 1부
- 6. 완료보고서(점검표) 1부